

- ▮ 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 ▮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규정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6., 2022. 1. 7.>

제2조(사업)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과학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 6.>

1.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활동, 학술행사, 학습조직 지원, 연구자 관리 및 연구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 관련 사업
2. 교육 및 학위과정 개발, 콘텐츠 발견 및 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 관련 사업
3. 학술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연구도서 출간, 교육 비디오품 제작, 관련 도서 번역 등 연구결과물의 출간 및 제작 사업 <개정 2011. 1. 6.>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1. 1. 6.>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교육과정개발부, 사업국을 두고 부 또는 국에는 부장 또는 국장을 두며, 부장 또는 국장은 전임교수,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학술연구부는 교육과정개발부와 협의하에 학술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개정 2011. 1. 6.>

③ 교육과정개발부는 학술연구부와 협의하에 학술연구 활동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 및 대중적 소통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개정 2011. 1. 6.>

④ 사업국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사업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4., 2011. 1. 6.>

-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사업의 수행과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조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4.>
- ②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6.>
- ③ 겸임연구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 6.>
-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 6.>
-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객원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으로 하고 연구과제 예산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 6.>
-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6.>

- 제7조(편집위원회)** ① 논문집 및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1. 1. 6.>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은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학내 전임교수와 학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

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6.>

⑥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 6.>

부 칙 <2022.01.07. 규칙 제11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인문학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통합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 등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의 기획, 투고, 심사, 편집, 발간(이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발간물의 성격 및 분야) 연구소의 발간물은 인문학의 전통적 연구, 학제적 연구 및 통합적 연구 혹은 이러한 연구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규정 제7조에 따라 편집위원장 및 학문 분야를 고려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5. 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간행물과 출판물의 장기 발간 계획 수립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4. 저작권 관련 사항 심의
5. 간행물과 출판물에 대한 평가

제6조(회의)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기획, 심사, 발간 등의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구소는 편집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자료료, 자료수집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학술지 편집

제7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명칭은 “통합인문학연구”로 한다.

제8조(발간 횟수와 시기) 연구소의 학술지는 연 2회, 8월 31일과 2월 28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획)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학술지의 주제 및 형식 등을 결정한다.

제10조(원고 모집 공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기획을 마친 후 발간 4개월 전(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원고 모집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11조(투고)

1. (투고 논문)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창의적인 논문이어야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1)
2. (투고 자격) 투고 자격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연구자’ 또는 석사 수료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 4. 1)
3. (투고 절차)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제재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정의 기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 관리) 편집위원회 간사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투고 및 심사 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원고 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기타) 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페이지와 학술지 등에 명시한다.

제12조(심사적부 심의)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의 심사 적부를 판단한다.
2. 논문의 심사 적부를 판단할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제13조(심사위원의 선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적부를 판단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5.4.1.)
3. (삭제) (개정 2010.2.11)

제14조(심사의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임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양식 등을 보내야 한다. 이 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책무)

1. 심사위원은 내용의 창의성과 논리성, 학문적 기여도, 형식 및 연구 방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뢰서>에 명기된 작성 방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정의 기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6조(심사결과 확정)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접수 후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아래 ‘1.’의 항목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2.’의 판정등급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주제의 참신성과 독창성(20%), 연구 목적의 명료성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20%), 연구결과의 학술적 의의와 기여도(20%), 논의 전개와 논리성(20%), 관련 자료 인용과 취급의 적합성(20%)
2. 무수정게재(A, 80점 이상), 수정후게재(B, 70~79점), 수정후재심사(C, 60~69점), 게재불가(D, 59점 이하)

무수정게재(A): 원고대로 게재 또는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

수정후게재(B): 소폭 수정, 보완 후 게재

수정후재심사(C): 대폭 수정, 보완 후 차기 호에서 재투고하여 재심사

게재불가(D): 게재불가

세 명의 심사위원에 대한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무수정게재: AAA, AAB, AAC

수정후게재: ABB, ABC, BBB, BBC

수정후재심사: ACC, ACD, BBD, BCC, BCD, CCC

게재불가: ADD, BDD, CCD, CDD, DDD

세 명 심사위원의 판정이 AAD나 ABD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개정 2025. 4. 1.)

제17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일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한다. ‘수정 후 게재’로 심의의결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장의 수정사항 확인을 거쳐 게재하며, ‘수정 후 재심사’로 심의의결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 후 D를 준 심사자 대신 제3자의 재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개정 2025.4.1.)

제18조(심사료) 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학술지의 체제 및 구성)

1.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2.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저자(들)의

- 경우는 제1저자 다음에 가나다 순서로 표기한다.
3.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고규정으로 정하며 이를 학술지 내에 공시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학술도서, 총서, 기타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제20조(기획)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제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을 기획할 수 있으며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 또는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 4.1.)

제22조(심사)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기획안과 원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3조(출판사 선정) 편집위원회는 도서 및 영상물의 출판사를 선정한다.

제24조(저작권) 편집위원회는 간행물과 제반 출판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평가) 편집위원회는 발행이 완료된 도서 및 영상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제26조(기타) 연구소는 도서 및 영상물의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윤리

제27조(편집위원회의 책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보유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5.4.1.)

제28조(논문 심사의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4.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5.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로 결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한다.
6.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기타사항

제30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반 간행물 및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연구소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7.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예비조사”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

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관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연구위원과 본교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 ②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신설 2020. 3. 24.>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개정 2020. 3. 24.>

제5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교내 학술지 발간,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

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원격교육연구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임명직 위원은 각 단과대학의 평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검증의 범위 및 절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개발 과제 of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
 - 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및 연구부정행위를 묵인·방조·은폐·강요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제보방법)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 전화,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피조사자 보호) ① 피조사자는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검증원칙 및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연구가 수행된 기간이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연구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사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제보내용이 제11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와 본조사 실시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예비조사 결과)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및 기타 관련 증거자료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2. 조사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할 것
-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익제기,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검증 결과를 확정하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본조사 결과) ①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검증 대상인 연구행위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및 기타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및 진술내용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③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의무) ① 총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연구지원기관

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검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총장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협약에 따른 조치와는 별개로 총장에게 징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검증 결과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무혐의로 판정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조사·심의·의결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

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111호, 2020.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어 정비에 따른 각종 규정 일부개정규정)

1. 원고 제출 및 게재

- 1) 《통합인문학연구》(Journal of Integrated Humanities)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타 학술지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통합인문학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이나 글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마감일 전까지 해당 파일을 이메일(bu15@knou.ac.kr)로 전송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출 원고는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영어 원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와 게재의 과정에 대해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의 형태와 분량

- 1) 연구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2) 연구논문은 B5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B5 3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4) 한글을 기준으로 한 편집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글자체: 한글 신명조체, 장평: 95%, 자간: -5%
 - ② 줄간격: 180%(도표안은 150%)
 - ③ 글자크기: 제목 16(진하게), 소제목 12(진하게), 본문 10.5(도표안은 10)
 - ④ 용지종류: B5(46배판) [182*257]
 - ⑤ 여백주기: 왼쪽·오른쪽 25mm, 위쪽 25mm, 아래쪽 10mm, 머리말·꼬리말 10mm
 - ⑥ 문단정렬: 양쪽혼합

3. 논문 작성 참고 사항

1) 학위 논문, 유사 논문

- (1)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합니다.
- (2) 제출 원고와 유사한 원고가 이미 논문의 형태로 타 출판물에 게재된 경우, 응모자는 그 이미 게재된 논문의 서지 사항을 제시하고, 제출 원고가 선행 논문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논문임을 설명하는 별도의 진술문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지 사항과 국문 초록

-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소속, 현직의 순으로 배치합니다. 부제를 달 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습니다.
- (2) 연구 지원기관이나 감사의 말은 논문 제목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합니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는 저자 이름 옆에 **표를 하여 각주로 처리하도록 권장합니다.
예) 한국 문화 연구 30년사: 비판적 개관*
홍길동**
(한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3) 국문 초록은 500~600자로 작성해서 필자 이름 밑에 제시합니다.
- (4) 국문 키워드를 3개 이상 선정해서 국문 초록 아래 제시합니다.

3) 영문 초록

- (1) 영문 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 (2) 필자의 영문 성명은 제목 아래에 소속과 직책을 함께 표기합니다.
예) A Thirty-Year History of Cultural Studies in Korea : A Critical
Overview
Hong, Kil-Dong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kook University
- (3) 영문 초록은 150~200 단어 분량으로 단락 구분 없이 작성합니다.
- (4) 영문 Keyword를 3개 이상 선정해서 영문 초록 뒤에 제시합니다.

4) 본문

(1) 일반적 원칙

- ① 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다음의 용례를 따릅니다.
예) 1. → 1) → (1) → ① → 가.
- ②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합니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합니다.
- ③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써 밝히지 않습니다.

(2) 인용

- ①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 쪽 번호만 밝힙니다.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예)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Williams, 1990)는 문화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홍길동은 “정치는 문화”라고 주장했다(1996, 25~26쪽).
 윌리엄스와 몰리는 “문화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Williams & Morley, 1990, pp. 7~8).
- ②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합니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Williams, 1990/1996, 25쪽).
 밀턴(Milton, 1875/1998)은 언론자유를 주장했다.
- ③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합니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열합니다.
예) (이몽룡, 1999; 홍길동, 1990)
 (Pan & Kosicki, 1993; Schefe, 1999)
 (Gogel, 1984, 1990; James, 1996a, 1996b)
- ④ 저자가 3-5명인 글은 처음 인용할 때는 이름을 모두 밝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에는 첫째 저자 다음에 OOO 외, OOO, et al.로 표기합니다.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모두 OOO 외, OOO, et al.로 표기합니다.

- ⑤ 논문 저자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줄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힙니다.

(3)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은 〈 〉 속에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입니다. 제목은 해당 표의 위에,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의 밑에 위치시킵니다.

예) 〈표 1〉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그림 1〉 뉴스의 기호체계

- ②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도 〈 〉를 붙입니다.

예)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

- ③ 표나 그림의 출처는 밑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예) 출처: *Title of Book* (p. 103), by A. N. Author, 1982, NY: Publisher. (책에서 인용할 때)

출처: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23쪽), 통계청, 1990, 서울: 통계청.
(책에서 인용할 때)

출처: “Title of Article”, by A. N. Author, 1982, Title of Journal, 50, p. 22. (논문에서 인용할 때)

출처: “국내 컴퓨터 보급현황”, 홍길동, 2002, 『한국정보화실태연구』, 45권, 34쪽. (논문에서 인용할 때)

- ④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주:), 개별주(a), b), c)), 확률주 (*p<.01, **p<.001), 출처 순으로 배열합니다.

5) 참고 문헌

(1) 목록작성의 원칙

** 일반적 사항

- ①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합니다.
- ②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어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한글로 제시하되 해당 원어 문헌을 병기합니다.

- ③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합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를 표기할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합니다.
예)스가랴 아키라(菅谷章)
- ④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합니다.
예) (1999a), (1999b)
- ⑤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行)부터는 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 간의 구별을 쉽게 합니다.

** 저자 표기

- ⑥ 저자가 1-5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외, ○○○, et al. 로 표기합니다.
예) 홍길동 외 (1984).
Winston, B. L., et al. (1983).
- ⑦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힙니다. 단 인용문헌에서 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합니다.
- ⑧ 만일 주 저자 다음에 with와 더불어 다른 이름이 열거된 문헌(예, Kuan- Hsing Chen with Hsiu-Ling Kuo, Hans Hang, and Hsu Ming Chu)은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을 모두 열거합니다. 단,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밝힙니다.

** 연도

- ⑨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씁니다.
- ⑩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씁니다.

(2) 논문

- ① 학술지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예
홍길동 (1991). “개방없는 북의 개혁, 실패”. 『월간 북한』, 35권 1호, 23~54.

홍길동·이몽룡 (1990). “북한 문학의 현상”. 『북조선』, 34권 2호, 123~148.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Scott, W. A. (1950).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ing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3), 79~91. (* 저널명, volume은 이탤릭으로 처리)

Glaser, R., & Bond, L. (Eds.). (1981). Testing: Concepts,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36(10). (저널 특별호 전체를 표기할 때).

*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저자/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합니다.

예) Hall, E. (2002, September), 김막동 (1999, 가을)

②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예

홍길동 (1990). 언어능력 평가에 있어 규칙 빈칸 메우기 절차의 연구. 김막동·이몽룡 (편), 『언어 능력 평가』 (45-66쪽). 서울: 새나라.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3)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 출판사 사향을 표기할 때엔 ‘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 명’(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일 때), ‘도시, 국가: 출판사’(영문 서적 중 미국 이외 지역일 때), ‘도시: 출판사명’(대도시일 때)순으로 합니다. 이때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씁니다(예, CA, NY, IL). 출판된 도시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먼저 나온 것만 표시합니다.

예) Hillsdale, NJ: Erlbaum.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Amsterdam: Elsevier.

* 출판사 이름에서 Books, Press 등은 밝히나, Publishers, Co., Inc. 등은

생략합니다.

① 단행본의 예

홍길동 (1990). 『영화 수명주기 분석』. 서울: 새나라.

홍길동·김막동(편). (1995).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전략』. 서울: 새나라.
(공편저일 때)

Fiske, J.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Harper & Row. (공저일 때)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공편저일 때)

② 보고서의 예

홍길동 (1999). 『한국 영화산업의 돌파구』(조사분석 99-03). 서울: 삼성
경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③ 학위논문의 예

홍길동 (1994). 『한국 방송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4) 번역서나 번역논문

* 번역서는 한글 번역서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힙니다.

① 번역서의 예

Seidman, S. (1998).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1999). 『지식논쟁: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② 번역논문의 예

Hall, S. (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203-232쪽). 서울: 한나래출판사. (원저 출판연도 1980).

Freud, S. (1961). “The Ego and the Id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pp. 3-66).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5) 신문잡지 기사

안병영 (1990. 6. 28).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5.
“언론개혁을 말한다” (2001. 9. 1). 『한국매일신문』, 1.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Gardner, H. (1981, Sept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70-76. (잡지 기사일 때)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 (1982, April 15). *APA Monitor*, 14. (신문기사일 때).

(6)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만 쓰지 않고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합니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습니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둡니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힙니다.

예) Author, I. (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 [On-line], 호수,
Available: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7) 시청각 자료(영화, TV 프로그램, 음반, CD-ROM 등)

Harrison, J. (Producer), & Schmiechen, R. (Director). (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 [Film]. (New York: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 (Executive Producer). (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

※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통합인문학연구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변지원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 편집위원 : 송정근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권영민 (방송대 교육학과)
이남형 (방송대 경제학과)
권유진 (방송대 생활과학부)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관희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통합인문학연구소 운영위원회

- 소장(운영위원장) : 이상진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 운영위원 : 한예림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장희재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한석현 (방송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남기현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이자명 (방송대 교육학과)
이현숙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김상수 (방송대 경제학과)
김승민 (방송대 생활과학부)

통합인문학연구

The Journal of Integrated Humanities

제17권 2호(2025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2025

발행일 | 2025년 8월 31일

엮은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펴낸이 | 고성환

펴낸곳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주소 :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승동)

전화 : (02)3668-4203

팩스 : (02)2088-4310

<http://ihc.knou.sc.kr>

ISSN 2005_9353

비매품



The Journal of Integrated Humanities

Vol. 17-2

CONTENTS

Yun, Yeo Kak

A Study on a Dimensional Approach in the Life Act 2 Design

Lee, Seong-Chul

A Study on the Learning Effect of Real-time Video Conference

Lee, Joon-Seok

A Study of Sophocles' Ajax: Homeric approach

Chang, Hee-Jae

A Study on Chinese Plays Based on the "The Inspector General"

Jeong, Hyeonsuk

Japan's Polic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Non-regular Workers: Is 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Young People Who can't Get Married?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tegrated Humanities Center



ISSN 2005-9353